

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9. 2.

임실군의회 의장

### 1. 제정이유

가. 임실군 보훈회관 준공(9월말) 및 입주(10월중) 예정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 목적 및 보훈회관의 위치 등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보훈회관의 사용단체(안 제4조)

다. 보훈회관의 위탁관리 및 관리운영비(안 제5조, 제6조)

라.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, 지도감독 등(안 제7조 ~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등

1) 부패영향평가/ 규제심사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'15. 6. 26. ~ '15. 7. 15)결과 : 특이 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붙임

3) 관련법령 발췌문 : 붙임

##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임실군보훈회관(이하 "회관"이라 한다)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29에 둔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단체의 회원"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이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18조의2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사용단체) 회관 사무실의 사용단체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한정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회관 여유 공간 발생 시 비영리 단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관리) ① 임실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내에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

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,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재 위탁 시에는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.

제6조(관리운영비 등) 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인력운영, 공공요금 등 수탁자 부담이 어려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건물, 장비,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.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임실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, 화재보험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탁의 취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3.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임실군에 귀속한다.

제9조(지도감독) 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10조(자체운영규칙) 수탁자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회관운영에 따른 운영경비(전기, 상하수도, 화장실 유지보수 등)  
연간 15,000천원 이하로 예상됨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지방자치법 제66조의3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

### 3. 미첨부 사유

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1호에 따라 보  
훈회관 연간 운영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### 4. 작성자

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

##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15A전북임실051		
정책명	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(안)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
	부서명	주민복지과	
	담당자명	최낙현	전화번호 063-640-2022
분석평가서 제출날짜	2015년 08월 12일		
주요 분석평가 내용 (주민복지과)	<p>○ 임실군 보훈회관 준공(9월말) 및 입주(10월중) 예정에 따라 향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</p>		
종합 검토 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<p>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 특성반영,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</p> <p>○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: 해당 없음</p>		
<p>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5년 08월 12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복지과장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박경숙/063-640-2123)</p> <p>주민복지과장 귀하</p>			

**참고**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**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**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